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의장 김현기입니다.
- 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먼저 본 폐지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접수되었으며('21.12.28.), 6개월 간의 청구인 서명 진행 후('22.1.5~ '8.10.), 총 6만4천347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고,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('22.8.23~ '9.2.)를 거쳐 최종적으로 4만4천856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었습니다.
이후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수리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장
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-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청구인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첫째, 동 조례가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서 규정한 주민의
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경
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
「지방자치법」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,
- 둘째, 동 조례 제29조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법률 또는
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설치되어 학생과 교사, 부모
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
의 동의 없는 직권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가 극단적인 선
택을 하는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,
- 셋째, 동 조례가 「대한민국 헌법」 제20조(종교의 자유) 및
제21조(표현의 자유)를 침해하여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
조차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
한다는 점,

- 넷째, 동 조례가 부모로 하여금 성 윤리, 복장, 두발, 신앙 및 성 정체성 교육을 자녀에게 실시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간주해서 동 조례로 인해 부모의 교육권(양육권)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점,
- 다섯째,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에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가 이와 상충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, 무엇보다 현재 동 폐지조례안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